

리케이온 운영규정

개정 2015.04.01.
개정 2016.03.0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기관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리케이온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기관은 교양교육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, 교육 본연의 목적과 우리대학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본 기관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 교양교육 분야 미래 발전 전략 계획 수립
2. 대학 교양교육 과정 개발 및 연구 (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)
3. 대학 교양교과목 외래강사 관리
4. 대학 교양교과목 수업지원
5. 대학 교양교육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
6. 기타 대학 교육 전반의 운영방법 연구
7. 대학 봉사활동 지원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) ① 본 기관에는 원장과 전임교수와 직원을 둘 수 있다. 다만 부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겸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본 기관의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본 기관의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장 운 영

제5조(운영) ① 대학교양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관한 심의와 자문은 “NCS기반 교육과정운영위원회”를 통해 실시한다.

② 대학교양 교육과정 연구개발은 “교양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”를 통해 실시한다. 교양교육과정개

발운영위원회는 스쿨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대학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